

자문 범위

- 각종 서류 검토**
- 기업 등의 해외진출, 외자유치,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 · 계약서 ·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· 회계자문
 -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· 회계자문
- 법령 및 회계 정보 제공**
- 해외진출 기업 등의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 · 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· 회계자문
- 분쟁예방**
- 기업 등의 해외진출,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· 회계자문
- 통상관련**
-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
 -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신청 방법

[방문신청] 업무시간에 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상담실 방문

[인터넷신청] 법무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j.go.kr>) 중 "법무서비스" > "법적지원" > "국제통상"



www.moj.go.kr



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

지자체와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고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지원합니다.



지자체와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고
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지원합니다.





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

‘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’은 중소기업, 공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.

설립 배경

- 지자체 외자유치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로 인하여 국제투자분쟁 가능성이 고조 >> 전문적 법적지원 필요
- 세무·노무·부동산 등 현지 법령정보 제공 필요 (09. 해외투자액 1,376억불, 해외진출 기업 46,000여개)

역할

- 해외진출기업, 공기업의 해외 투자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
- 지자체,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외자유치, MOU 시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, 중소기업, 공기업, 지방자치단체,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

지원 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“중소기업”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“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”
-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“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”

신청 절차

01

기업현황표

[기업]

> 지원대상임을 증명

> 첨부서류

- ① 사업자등록증사본
- ②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인 경우)

회사(업체)명	대표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설립년월일	회사(업체)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본사주소		기업	본사주소
공장주소		기업	공장주소
홈페이지	문-1111	기업	홈페이지
주요종	주요상종	기업	주요종
매출액	원	기업	매출액
담당자	부서 :	기업	담당자
연락처	핸드폰번호 :	기업	연락처

02

자문 용역약정서

[기업 + 자문위원]

업체명	대표자	자문위원
신청인	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	신청인
위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을에게	사할 것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제1조 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	호의 사무를 말한다.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의 사무를 말한다.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신청인	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	신청인
위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을에게	사할 것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제1조 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	호의 사무를 말한다.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의 사무를 말한다.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
03

자문 용역확인서

[기업 + 자문위원]

> 용역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

> 구비서류

- ① 자문 용역약정서
 - ② 자문관련 증명서류 등
- (예) 계약서·협약서·정관 사본, 회해·중재·소송 관련 서류 등

자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신청인
대표자	주민등록번호	신청인
주소	전화번호	위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을에게
성명	소속	사할 것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주소	전화번호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
신청내용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자문내용	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소요시간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위 자문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	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 함은 을이 갑을 위하여 하는 다음
2000년 월 일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신청기업:		신청인
대표자:		위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회계자문을 을에게
자문위원:		사할 것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2000년 월 일		본 약정서에서 “법률 및 회계 자문”이라
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		호의 사무를 말한다.

절차도



자문단 구성

소속	성명 및 주요업무
김앤장	윤병철(국제중재), 임병우(국제중재)
태평양	변웅재(외자유치/해외투자), 권대식(중국), 김성욱(중국)
광장	이상기(중국), 이은재(국제중재), 최광호(중국)
세종	김범수(국제중재), 송종호(기업공개), 최용원(중국)
화우	유지현(국제투자), 조영선(국제계약), 김한철(러시아)
울촌	이영석(국제중재), 김세연(국제중재), 김경연(해외투자/러시아)
지평지성	김상준(해외투자/외자유치), 정정태(해외투자/베트남), 한승혁(국제업무)
로고스	임형민(해외투자), 백무열(베트남/캄보디아), 김경섭(해외투자)
대륙아주	박성문(국제중재), 이현우(국제업무)
에이펙스	김수현(중국), 이경천(베트남투자), 류영덕(캄보디아), 김신우(해외투자/국제거래), 스도넬 돌진(몽골)
동인	김기열(중국)
정평	이주관(중국/국제중재), 김용욱(베트남), 이재일(베트남)
삼일	송상근(해외투자), 김주덕(해외투자)
안진	이상근(해외투자), 이진규(해외투자)
삼정	조민식(해외투자), 서상훈(해외투자)

